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50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0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호)에 따라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보훈정책개발원’이란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을 말함³⁾.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보훈정책개발원은 국가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둘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호)은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⁴⁾, 보훈정책개발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효과성이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금전 지원에 비하여 국유재산특례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⑤ (생략)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미래 전망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수집, 정책 설계 및 분석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예우, 복지 등 보훈정책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

3.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개발,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4.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

5.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 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수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 ⑮ (생략)

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 ⑩ (생략)

⑪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⑫ ~ ⑮ (생략)

셋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호)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보훈정책개발원으로, 그 요건을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수행 사업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바⁵⁾, 국유재산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⁶⁾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아울러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8129)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 ⑤ (생략)

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미래 전망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수집, 정책 설계 및 분석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예우, 복지 등 보훈정책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
3.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개발, 교육 및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4.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
5. 국가보훈에 관한 정책 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수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특례가 국가보훈정책 발전 및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설립 요건 및 사업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훈정책개발원은 현재 ‘보훈교육연구원’의 사무공간을 활용할 예정으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 비추어 존속기한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8129호)

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①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⑩ (생략)

⑪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⑫ 정부는 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⑬ ~ ⑮ (생략)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0	「국가보훈 기본법」 제15조2	사용료등의 감면	2032. 12. 31.

문의처

02)6788-5150